

재 입 찰 공 고(긴급)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「2018년도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권역별 통합 지원사업」 수행기관 공모 재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. 12. 04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18년도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(16개권역)
- 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수 :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, 총 9개
 - 경기, 강원, 경남, 부산, 전남, 광주, 충남, 대전(세종), 제주
 - 지역 사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동시 지원하는 통합지원기관 선정 가능
 - *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지역별 분사무소 운영 가능
 - ** 광역별로 1개 기관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, 인접 권역에 소재한 1개 기관을 2개 권역의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 가능
 - ***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대전 지원기관에서 통합지원

□ 지원사업 수행기관 역할

가. 공통사항

① 지역별 (예비)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

-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참여가 필수
- (예비)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등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
 - * 지역내 정부사업 추진 기관(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, 민간위탁기관), 자치단체(기초 포함), NGO, 종교단체, 기업, 학계, 공공기관, 지역별 사회적기업협의회·협동조합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
-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컨소시엄 운영 가능
 - * 다만, 지원기관의 업무 성격상 행정지원에 해당하는 각종 심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분야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필요

② 개별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원연계(지역 중견기업 경영자, 자원봉사자, 프로보노 등) 체제 구축

- 중앙단위의 프로보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내 프로보노를 발굴하고, 지역 내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에 알선
 - * 개별 기업마다 선발 기업가·프로보노(경영자문단) 매칭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사항 해소
 - ** 지역 자원 한계가 있는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매칭

③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년도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상담 업무 수행

나. 사회적기업 부문 I - 사회적기업 지원

① 신규 모델 발굴 · 확산

- 광역 자치단체 단위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
 -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내 적용 가능한 신규 모델 발굴 · 확산
- 여러 정부부처 ·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여 신규 모델을 발굴

②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

- 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 파악 및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인증 신청에 필요한 조직전환, 정관구비 등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
- 사회적기업 제도, 인증요건 · 절차 등 설명회 개최
-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한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실사 및 현장조사표 작성(인증 신청 전 지원기관 사전 검토)
-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한 인증신청 지원

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-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

④ 재정지원 사업 지원

-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

⑤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

- (예비)사회적기업 등의 기업상황을 파악하고,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를 직 · 간접적으로 제공

-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소 연 2회 이상 직접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, 사업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
 - 서비스 수요,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(자치단체, 기업 등의 지원현황 관리도 포함)
 - 사회적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·관리를 통해 경영지원의 연속성 확보
 -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장년층을 상담할 수 있는 ‘장년 전담 인력’지정 운영
 - (예비)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안내
 - (예비)사회적기업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자금지원제도* 안내
- * 정책자금지원(미소금융, 중소기업정책자금, 신용보증재단 및 기금,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등) 및 민간금융기관(우리은행 등) 사회적기업 전용 상품 등

⑥ 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

-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(온라인 사업보고서) 작성 및 관리 지원
 -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교육 및 사업보고서 검토 등
-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지원
 - 자율 경영공시 홍보, 참여기업 모집 및 공시 자료 작성 교육 등

⑦ 행정 지원

-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에 따른 행정지원 및 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
- 기타 고용부, 광역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

⑧ 홍보,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

- 지역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·배포
- 각종 홈페이지에 지역별 활동 현황,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(SNS를 통한 지역 내 홍보도 포함)
- 일자리참여기관·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교육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
- 그 외 (예비)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

다. 사회적기업 부문Ⅱ- 기초경영지원사업 운영

① 권역내 (예비)사회적기업 통합경영현안 진단 및 수요발굴

- 경영지원이 필요한 권역내 (예비)사회적기업 현황* 파악 및 방문 등을 통한 경영 진단 실시
 - * 재정지원사업 종료(예정)기업 및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방문 진단 등을 통해 진단보고서 작성
- 간단한 상담 및 코칭을 통해 해결 가능한 범위는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, 상담 및 코칭을 범위를 넘어선 진단은 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사업으로 연계
-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'기초경영지원사업'을 적극적으로 안내/홍보(홈페이지, 뉴스레터,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)하여 상담, 코칭 수요 발굴 및 신청접수 지원

*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등과 연계 가능

② 기초경영지원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

- 지원기관 전담자가 1차적으로 (예비)사회적기업의 신청, 발굴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니즈 및 현안을 파악하고, 해결 가능범위에서 전담자가 직접 해결 지원

* 인사/노무, 회계/세무, 법무/법률, 사회적기업가 멘토링 등 보다 전문 있는 지원 필요시 전문가(POOL)를 연계 건당 1~3회(12시간) 내외 상담 지원

- 1차 상담 이후 추가적인 전문가의 상담, 코칭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

③ 지원기관 내 전문가POOL 구성 및 운영

-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인적/물적 자원과 연계한 '전문가(POOL)'을 구성*

* 일정 자격을 갖춘 노무사 및 회계사, 권역 내 사회적경제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사회적기업가(멘토), 기타 (예비)사회적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요

- 전문가POOL 참여 인원의 발굴/모집, 선발 전략 제시
- 전문가POOL의 사회적기업 제도 및 경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, 간담회 등을 실시

④ 기초 경영 역량 교육 및 경영상담의 날, SE네트워킹 행사 운영

- 기업의 기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, 회계세무, 법률법무, 판로 및 마케팅방안 기본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실시
- (예비)사회적기업의 다양한 경영고민을 1:1 상담할 수 있는 경영애로해소의 날 등 운영
- 업종별, 지역별 의제(지역 내 공동판로 개척, 공동마케팅방안) 등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, 공동형 컨설팅으로 연계

⑤ 기타 지원

- 기타 (예비)사회적기업에 기초경영지원사업 지원체계, 상담·코칭 진행절차 지원방법 등 안내, 실시 계획 등 관련 사항 전파
- 지역 내 기초경영지원 우수사례를 발굴/추천하고, 지역 단위 성과 공유의 자리(간담회, 워크숍 등) 마련

-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
- 그 외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라. 협동조합 부문 지원

①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

- 협동조합 신고에 필요한 서류 검토 등 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
-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에 필요한 정관구비 등 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
-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요건 충족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시행착오를 줄이며, 인가 신청기관 현장실사시 진흥원과 동행하여, 지역상황 정보제공 등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인가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

② 신규 모델 발굴 · 확산

- 협동조합 설립 가능 단체 · 법인등의 협동조합 설립 유도과 협동조합 운영 우수 모델 발굴 및 전파
 - 정부부처 ·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법인격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 지역에서 밀착 지원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유도 및 신규 모델 발굴 · 전파
 - 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나, 협동조합 운영 원리를 따르는 기관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'조직 변경'규정을 통해 협동조합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
 - 협동조합의 가치 및 사업 측면 등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, 지역 내 적용 가능한 신규 모델 발굴·확산

③ 협동조합 운영상담 및 현장지원

<가> 운영지원

- 협동조합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,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 자문서비스를 직·간접적으로 제공
-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계·노무·법무 등 협동조합 경영상담 및 컨설팅 연계 지원

<나> 현장 지원

- 전담인력 인원당 최소 주 1회 이상 관내 활동 중인 (사회적)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, 사업운영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,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코칭 실시
- 다단계 협동조합, 조합원간 갈등·소송 등 지역의 문제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 파악
- 서비스 수요,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(자치단체, 기업 등의 지원현황 관리도 포함)
 - 현장 지원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·관리를 통해 경영지원의 연속성 확보

④ 협동조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

- 협동조합 신고 및 인가 요건·절차 등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
 - 연 1회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교육 실시
-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, 업종별·분야별 특화 교육 등 실시
-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
-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협동조합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내실 있는 협동조합 교육 체계 구축

⑤ 협동조합 경영공시 지원

- 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및 자료 작성 지원
 -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작성교육 및 사업 보고서 검토 등
- 그 밖에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

⑥ 홍보 등 기타 필요한 업무

- 지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·배포
- 각종 홈페이지에 지역별 활동 현황,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(SNS를 통한 지역 내 홍보도 포함)
- 기획재정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
-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

☐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

☐ 모집권역 : 10개 권역 (경기, 인천, 강원, 경남, 부산, 전남, 광주, 충남, 대전(세종), 제주)

☐ 수행기관 인정기간 및 위탁계약 방법

- 수행기관 선정 심사에서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의 자격을 3년까지 인정한다. 다만,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 사업이 폐지, 사업 수행지역 조정, 예산삭감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다년간 수행기관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, 수행기관의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.

※ 자격부여 기준 : 2017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평가결과와 2018년도 선정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30%이내에서 결정 (단, 심사 위원회에서 다년지정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)

- 다음 연도 공모 선정시 다년간 수행기관이 담당하는 지역은 수행기관 공고를 실시하지 않는다.

○ 3년 지정은 “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”을 지속하는 경우에 유효

○ 위탁계약은 예산이 확정되는 연도별로 체결한다.

□ 사업예산

<1> 공통사항

○ 각각 사회적기업 I, 사회적기업 II(기초경영지원), 협동조합 부문의 지원 조직(인원) 및 예산을 구분(예산산출내역서 3종)

○ 사업예산은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확정결과 및 우선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지원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시작월(1월)과 종료월(12월)은 1개월로 인건비를 산정

<2> 사회적기업 부문 I : 총 3,590백만원 이내

○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188백만원부터 최대 389백만원 이내

※ 경기(389백만원 이내), 서울(365.5백만원 이내), 강원·광주·전북·경북(211백만원 이내), 부산, 전남(210.5백만원 이내), 대구·대전(세종포함)·경남·충북·충남(199.5백만원 이내), 인천(195백만원 이내), 울산(190백만원 이내), 제주(188백만원 이내)

-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80%를 넘지 않아야 함

<3> 사회적기업 부문 II(기초경영지원사업) : 총 735백만원 이내

○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35백만원부터 최대 75백만원 이내

※ 서울·경기(75백만원 이내), 강원·경북(47백만원 이내), 인천·부산·전북·전남(44백만원 이내), 대구·광주·경남·충북·충남(42백만원), 울산·제주·대전(세종)(35백만원 이내)

-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60%를 넘지 않아야 함

<4> 협동조합 부문 : 총 1,724백만원 이내

○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76.7백만원부터 최대 170.1백만원 이내

※ 서울, 경기(170.1백만원 이내), 인천, 울산, 경남, 제주(76.7백만원 이내), 그 밖의 지역(107.7백만원 이내)

-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85%를 넘지 않아야 함

2 계약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

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”을 준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

3 입찰 참가자격

☐ 기본 자격요건(조직)

○ 회계·노무·법무·경영 분야의 전문가 3명 이상을 확보* 하고 있고 지역 내 자원 동원능력 등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보유한 단체·법인**

* 전문가 고용현황, 회계법인·컨설팅 회사 등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또는 프로보노 풀 등으로 확인

** 해당 기관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동일생활권 이거나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지역도 인정

☐ 필수 자격요건(인력 등)

○ 지원기관 역할이 행정지원 업무를 포함하므로 실무인력 보유 등

기본적인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함

- (사회적기업 부문 I) 사회적기업 전담인력(투입률 80%이상)을 최소 4명 이상 고용 (기초경영지원사업 투입인력 제외)
- (사회적기업 부문 II-기초경영지원사업)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및 직접적인 코칭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
- * 지원기관 전담자는 5년 이상 사회적경제지원 경험이 있는 팀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
- (협동조합 부문) 협동조합 전담인력(투입률 80%이상)을 최소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, 그 중 1인은 협동조합분야 경력*이 1년 이상 또는 진흥원장 명의의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수료증 보유

* 협동조합분야 종사경력 이외에 관련분야 지원경력도 포함

○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관련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【붙임1-3】

- 여러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
-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·협동조합연합단체 등 관련 조직, 지역 NGO, 종교단체,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, 민간기업, 법률·회계·세무·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인적·물적 연계

※ 신청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함

4 입찰 참가신청

□ 제출서류

- 입찰참가신청서

- 지역별 네트워크 MAP(제안요청서의 【붙임1-3】 참고)
- 제안서 10부(원본1부(별도표시), 사본9부) 및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

* 제안서에는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을 구분한 사업계획이 명시되어야 함

** 붙임의 제안서와는 별도로 광역시·도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가격입찰서 1부(밀봉)
 -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- 사용인감 사용 시, 사용인감계 1부
 -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부
 -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
 -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1부(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파일을 USB로 제출)
 - 사업참여근로자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확인서
 -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
 - 각 신청서가 수록된 매체(CD 또는 USB 2개)
 - 청렴계약이행서약서 / 서약서 /개인정보 수집, 조회 및 활용 동의서(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참여자 모두 각 1부씩) 각 1부
 - 이행(입찰)보증보험증권 1부
 -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(사본은 원본대조필)
 -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(사본은 원본대조필)
- 입찰등록마감일시 : 2017. 12. 13.(수). 낮 12:00

□ 등록장소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·설립지원팀(우편 접수 불가)

※ 주소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층

※ 단, 입찰에 기참여한 기관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대체하여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접수 가능

(이 경우, 우편접수도 가능, 단 '17.12.13.(수) 낮 12시까지 진흥원에 우편도착)

□ 낙찰자 선정 : PT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5 협상 및 낙찰자 결정

□ 기본방침

-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,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
-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

□ 적용규정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”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: 제247호, 15.9.21)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추진
- 협상은 제안서 기술(PT)평가(80%)와 가격평가(20%)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(다만,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)

□ 선정 절차 및 방법

<위탁기관 단계별 선정절차>

◆ 입찰재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제안서 심사(재공고에 따른 1차 서면 심사 생략, 2차 PT심사) →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→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
심사단계	구 분	내 용
1단계	1차 심사	• 재공고에 따른 1차 심사 생략
2단계	2차 심사 (‘17.12.20(수))	• Presentation 심사
3단계	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(‘17.12.22.)	• 2차 심사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※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* 우선협상 기간 : ‘17.12.26.(화)~29.(금)(4일간)
4단계	계약체결 (‘18.1월~18.12월)	•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* 계약기간 : ‘18.1월초~18.12.월 31일 예정

*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입찰공고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고용노동부, 협동조합 홈페이지
- 입찰공고 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진흥원)의 장에게 제출

* 【붙임1】 입찰참가 신청서

-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진흥원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진흥원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
- 제안서 평가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PT심사로 진행
 - 1차 서면심사는 재공고에 따라, 생략
 - 2차 종합심사 결과 고득점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*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,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
-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진흥원의 고유권한
- 기술점수 미달 및 PT심사 결과 역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재공모
 - 재공모 이후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, 인접 광역 자치단체의 통합지원기관에 위탁 가능

- 광역별로 1개 통합지원기관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 2개 이상 권역이 동일생활권이거나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, 인접권역에 소재한 1개 기관을 2개 권역의 통합지원 기관으로 선정 가능
-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
 -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
-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

☐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

- 사업계획의 범위 및 내용, 위탁비용 등의 조정이 가능(협상 시)
-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(금액, 기타 수치자료)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,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

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
- 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

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

- 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접수는 불가함
- 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

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

- ☐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☐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)
- 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- ☐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
- ☐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“입찰에 관한 서류”를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
- ☐ 문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(☎ 031-697-7722), 설립지원팀(☎ 031-697-7732)로 문의

8 주의사항

- ☐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